

우리나라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 분석: 국가 및 산업별 특성을 중심으로*

Rules of Origin of Korea's FTAs: based on Restrictiveness Index

권 미 옥** Mi-Ok Kwon

나 희 량*** Hee-Ryang Ra

| 목 차 |

I. 서론	IV. 우리나라 FTA의 산업별 엄격성지수
II. 기존문헌연구 및 우리나라 FTA 엄격성지수별 원산지결정기준	V. 결론
III. 우리나라 FTA의 국가별 엄격성지수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15개 FTA를 대상으로 HS코드 6단위, 15가지 품목군 별로 엄격성 지수를 도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원산지결정기준의 국가별, 시기별, 품목별 현황과 특성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EU와 터키와의 FTA가 가장 높은 엄격성을 나타낸 반면 뉴질랜드, 페루, 인도와의 FTA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럽권 FTA를 제외하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엄격성 정도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1차산품과 가공식품, 의류/직물/잡화의 품목에서는 엄격성지수가 높았고 반면 전기기계, 전기기기, 화학제품, 정밀기기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세율이 높고 경쟁력이 취약한 민감품목은 엄격하게, 교역활성화를 위한

* 본 논문은 제1저자인 권미옥의 석사학위논문 「우리나라 FTA의 원산지결정기준 연구: 엄격성지수를 활용하여」를 수정·보완한 것임.

** 부경대학교 국제통상물류학과 석사, 제1저자

*** 부경대학교 국제통상학부 부교수, 교신저자

품목들은 유연하게 설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방대한 분량의 우리나라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근거로 국가별, 품목별로 엄격성지수와 원산지결정기준을 도출, 집대성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2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한국의 FTA, 원산지규정, 원산지결정기준, 엄격성지수, HS코드

I. 서론

최근 국제통상질서는 WTO 중심의 다자주의적 무역체제의 확산이 주춤 가운데 지역주의적 특성이 강한 자유무역협정(FTA)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WTO에서 집계한 지역무역협정(RTA) 발효건수는 398건이며, 이 가운데 상품무역을 다룬 FTA가 23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FTA를 통한 자유무역의 확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FTA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쟁점 중 하나는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이다. FTA의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기업이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FTA에서 요구하는 원산지규정과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원산지규정은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수출상품이 협정 당사국에서 생산된 것임을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 협정문 내에 HS코드 별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roduct specific rule)을 규정한 부속서 형식으로 포함된다.¹⁾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준으로 원산지가 판정되므로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각 FTA별, 품목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고 우회수입을 차단하고 역내교역 활성화 및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설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은 수출입 시 행정적, 절차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시키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여 자유무역을 통한 무역의 이익 확대라는 FTA의 목적을 상쇄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엄격성지수(restrictiveness index)와 같은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 및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 정도가 교역에 미

1) HS코드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칭으로 1988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모든 상품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국제적 상품분류체계로, 7~10번째 숫자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6번째 숫자까지는 국제적으로 동일하다. 특정 제품에 어떤 코드를 부여하는가에 대해서는 수입국이 결정하는데, 이 코드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진다. 따라서 수출국은 관세가 적은 코드를, 수입국은 관세율이 높은 코드를 부여받는 것이 유리하다.

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원산지결정기준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가 HS코드 기준 5천여 가지가 넘을 정도로 방대할 뿐만 아니라 FTA별로 그 원산지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실체를 전부 파악하는 것을 쉽지 않다. 그래서 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대상 FTA 및 상품군을 한정하여 분석하거나 엄격성지수가 교역량에 미치는 영향 및 FTA 활용도 파악을 위한 변수로 활용되는데 머물고 있다.

본 논문은 우선 기존 연구의 미진한 부분이었던 우리나라 FTA의 엄격성지수를 국가별, 산업별로 산출한다. 다시 말해 2016년 2월 현재 발효를 앞두고 있는 콜롬비아와의 FTA 및 기 발효된 14건(총 51개국)의 FTA 총 15건의 FTA를 대상으로 HS 6단위의 15가지 품목별로 분류하여 한·칠레 FTA부터 한·EU FTA까지는 기존 연구들을 활용하여 보완하고 한·페루 FTA부터 한·콜롬비아 FTA까지는 각 협정문의 부속서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새롭게 엄격성지수를 도출하였다. 또한 측정된 엄격성지수를 통하여 FTA별,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엄격성의 정도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 발표 및 타결된 모든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지수를 심도 있게 산출하고 이를 집대성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의 결과는 FTA활용도를 높이고 무역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다음 장에서는 관련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우리나라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지수를 협정별로 분석, 정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협정국별 특성 및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4장에서는 우리나라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지수와 원산지결정기준의 설정유형 등을 산업별로 도출하고 그 특성 및 의미에 대해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Ⅱ. 기존문헌연구 및 우리나라 FTA 엄격성지수별 원산지결정기준

1. 원산지결정기준 및 엄격성지수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어떤 물품이 성장,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혹은 국가를 의미한다. 이는 어떤 물품의 생산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조립국, 경유국, 적출국, 자본 투자국, 브랜드 소유국과는 구별된다. 최근 생산공정의 글로벌화로 인하여 원

산지규정은 복잡해지고 있다.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은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고, 특혜 또는 비특혜 무역조치를 규정하는 각종 기준 및 절차로 국제협정, 법규, 판례, 행정결정 등의 형태로 존재하며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판정기준 및 표시방법의 실제적 규정과 원산지증명서류의 작성·제출 및 세관당국의 확인과정 등 절차적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²⁾ 국제무역거래가 복잡해질수록 원산지규정은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소비자 및 국내생산자 보호, 산업 및 무역정책, 무역장벽, 보건위생 및 자연환경보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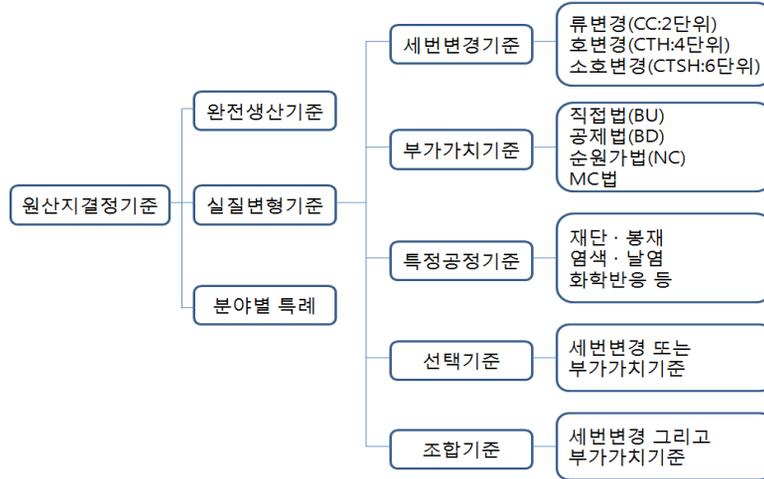
FTA 원산지규정은 역내산, 역외산 물품을 차등 대우하는 기준으로 양국 간 투자 및 교역의 활성화, 우회수입의 방지, 민감산업보호 등을 고려하여 양국 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각 FTA마다 양국 간 산업구조·관세율구조 및 교역특성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상이한 원산지기준이 도입된다.³⁾ FTA 원산지규정에 따라 각 협정이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에 한하여 FTA의 협정관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원칙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형기준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실질변형기준은 다시 세번변형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주로 사용하는데 협정문의 부속서에서 품목별 적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는 세번변형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중 하나의 기준이 적용되는 단일기준과 세번변형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또는 특정공정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선택기준, 그리고 세번변형기준과 부가가치기준(또는 특정공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조합기준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원산지결정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형기준의 기본원칙에 의해 대부분 판정되지만 원산지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보완과 국제무역의 촉진을 위해서 기본원칙을 보충하는 분야별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누적기준, 최소허용기준, 중간재, 간접재료, 대체가능물품, 부속품·예비품, 포장용품 및 용기, 세트물품, 재수입물품, 전사용품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림1>은 위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2) 원산지규정 관련 국제법규로는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정(1883)이 최초라고 할 수 있는데 동 협정 제 10조에는 원산지 또는 생산지에 관한 허위표시를 한 수입물품은 압류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후 미국 관세법(1890)을 비롯하여 유럽 국가들의 관세법 등에서 원산지규정이 입법화되었다. GATT 제9조에 원산지표시 규정(1947)을 두었고, 교토협약(1973)은 부속서로 원산지기준과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을 규정하였다. WTO에서는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1995)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통일원산지규정(Harmonized Rules of Origin) 제정을 위한 다자간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3) 우리나라는 2004년 FTA특례법령으로 한·칠레 FTA가 발효되면서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검증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관세청고시로 시행하였다. 이후 FTA가 확대됨에 따라 2010.3.2.일부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시행되고 있다.

〈그림1〉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조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Goods Criterion: WO)이란 어떤 물품이 한 국가 내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획득한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한다. 완전생산기준은 통상 원산지결정기준의 ‘일반기준’으로 품목에 상관없이 적용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의 ‘품목별기준’에서 완전생산품의 요건을 두는 경우도 존재한다. 완전생산품에 대한 정의도 광물성 생산품, 식물성 생산품, 산 동물 및 그로부터 획득한 물품, 영역 내 수렵·어로·양식에 의한 생산품, 영역(영해) 밖 바다 획득물품 등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각 협정마다 조금씩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에는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실질변형기준’에 의해 원산지를 결정한다. 실질변형기준은 우리나라의 각 협정마다 각 품목번호별로 원산지 인정요건을 정한 품목별기준을 두고 있다. 물품의 본질적 특성의 변화를 기반으로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 부가가치기준이 주를 이룬다. 우선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이란 원재료와 완제품의 HS코드 변경여부를 기초로 하여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다. 세번변경기준에는 통상 가공 정도에 따라 해당 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세번이 바뀌면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바뀌는 것으로 간주한다. 세번변경기준은 HS 품목분류의 원리를 활용하여 원산지를 제정하는데 용이하며, HS 자체가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의 FTA에서 널리 채용되고 있다.

세번변경기준은 세번이 어느 수준에서 변경되어야 원산지가 변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가 중요하다. 이는 2단위(CC: Change of Chapter), 4단위(CTH: Change of Tariff Heading), 6단위(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 세번변경기준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하며, 세번의 구성 상 단위 수가 커질수록 해당 기준을 상대적으로 쉽게 충족할 수 있으므로 각국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을 선택함에 있어 경쟁력이 약한 품목은 2단위, 중간 수준은 4단위, 경쟁력이 강한 품목은 6단위 변경기준을 채택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on)이란 당해 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가공과정에서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Value contents)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부가가치기준은 다른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간편하고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실무상으로 부가가치 산출을 위해 직접재료가격, 제조직접노무비, 직접원가, 제조원가, 공장도가격, FOB가격(국내운송비 등 포함), 수입원재료의 CIF 가격 등 다양한 가격들을 정확히 산출하여야하기 때문에 오히려 타 기준에 비해 복잡하고 다양한 가격 산정 시 이해관계자들과의 분쟁 및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산정된 부가가치비율이 인정 기준에 근접하는 경우 제품 및 재료의 가격 등락과 환율변동 등에 따라 비율이 변동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작문제 등의 여지도 존재한다. 요구되는 역내가치의 수준은 각국의 품목별 경쟁력을 기초로 정해지게 되며 경쟁력이 강한 품목일수록 비율을 낮게 정하여 수출을 촉진하고, 경쟁력이 약한 품목일수록 비율을 높게 정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⁴⁾

부가가치기준의 계상기준은 일반적으로 관세평가협정, Incoterms 및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FTA에 따라 부가가치비율 산출에 필요한 기준가격, 산정공식, 품목별 부가가치비율은 각각 상이하나 통상 30~60% 수준에서 다양하게 정해지며, RVC법은 이 비율이 높을수록, MC법은 이 비율이 낮을수록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특정공정기준(Specific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이란 해당 물품의 제조공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제품의 주요 특성을 지니게 하는 기술적인 제조·가공작업을 열거하여 해당 공정이 역내에서 수행되었을 경우 해당 제품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는 기준이다. 특정공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 보다 적용되는 품목의 범위가 좁은 편이다. 주로 어류, 식물성 생산품, 석유제품, 화학제품, 플라스틱, 섬

4) 부가가치기준에서 비율을 산정할 때는 크게 RVC 방식과 MC 방식으로 구분된다. RVC방식(Regional Value Contents Method)은 특정국가에서 발생한 역내가치가 일정비율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MC방식(Import Contents Method)은 역외가치가 일정수준 이하일 것을 요구하는 산정방식이다. 역내가치계산방법(RVC)으로 부가가치비율을 산정하는 방법은 공제법, 집적법, 순원가법의 세 가지로 나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논문에서는 생략한다.

유제품 등에서 이 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세번변경기준 등과 병용 혹은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어류, 식물성 생식품, 석유제품, 화학제품, 플라스틱제품 등의 경우 세번변경기준과 가공공정기준 중 한 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선택기준의 형태를 지니며, 섬유제품의 경우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과 동시 충족하도록 하는 조합기준의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정도를 나타내는 ‘엄격성지수’는 Estevadeordal(2000)에 의해 처음 고안되었고 Estevadeordal & Suominen(2004)의 연구에서 보완, 확대되었다. Estevadeordal의 연구 이후에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이 지수를 이용하여 다수의 연구자들이 이를 수정·보완하는 형태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Estevadeordal에 의하면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은 1~7의 지수로 환산된다. 지수가 높을수록 원산지규정이 엄격함을 의미하며 생산자에게 있어서는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다. 세번변경기준의 경우에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보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보다 엄격성 정도가 높아진다. 또한 역내부가가치기준과 특정공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과 결합할 시 원산지규정은 더욱 엄격해진다고 할 수 있다. 아래 <표1>은 Estevadeordal의 엄격성지수를 요약한 것이다.

<표1> Estevadeordal의 엄격성지수 개요

지수	엄격성지수 요건
7	CC(Y ≤ CC&TECH or WO) (지수 6보다 엄격하되, CC+특정공정(TECH) 또는 완전생산기준(WO))
6	CTH&RVC(Y ≤ CC) (지수 5보다 엄격하되, HS 2단위 변경(CC))
5	CTH(Y ≤ CTH&RVC, RVC) 50% (지수 4보다 엄격하되, CTH+RVC, 부가가치 단일기준 50%초과)
4	CTSH&RVC(Y ≤ CTH, RVC ≤ 50%) (지수 3보다 엄격하되, HS 4단위 변경(CTH), 부가가치 단일기준 50%이하)
3	CTSH(Y ≤ CTSH&RVC) (지수 2보다 엄격하되, CTSH+역내부가가치(RVC))
2	CI(Y ≤ CTSH) (지수 1보다 엄격하되, HS 6단위 변경(CTSH))
1	Y ≤ CI (HS 6단위 이상에서 변경)

자료: Estevadeordal(2000), Estevadeordal & Suominen(2004)

2. 엄격성지수 관련 선행연구

엄격성지수에 관한 선행연구는 Estevadeordal(2000)이 최초로 고안하고 이를 기초로 한 호주의 Productivity Commission(2004)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엄격성지수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한 실정인데 최근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시되면서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정인교·조정란·방호경·김석오(2005)는 그동안 FTA협정에 대한 평가에 있어 주로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등 경제통합의 손익이 중요한 기준이었지만 FTA의 경제적 효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시하였다.⁵⁾ 원산지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FTA 혜택의 적용 폭이 작아져 무역자유화의 의미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동 연구에서는 Estevadeordal의 엄격성지수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와 칠레, 싱가포르와의 FTA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NAFTA와 G-3⁶⁾ 원산지규정보다는 덜 엄격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호주 PC의 엄격성지수를 사용한 분석결과에서는 NAFTA, PANEURO보다 덜 엄격하지만 AFTA, 호주-뉴질랜드 FTA, G-3보다는 엄격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⁷⁾ 조정란(2006)은 원산지규정이 복잡하고 엄격할 경우 이를 충족하기 위해 수출자, 생산자는 많은 비용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단순하고 중립적인 원산지규정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Estevadeordal(2000)의 분석방법은 단순하고 호주 PC의 분석방법은 각 항목 간의 비중이 있어 자의성이 문제가 된다고 비판하였다. 노덕률(2008)은 최근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FTA 특혜관세 활용이 저조한 이유가 FTA 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서로 다른 엄격성 때문에 원산지증빙에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스파게티볼 현상으로 판단해 FTA 특혜관세 활용실태를 분석자료로 삼아 회귀분석모형을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⁸⁾ 분석결과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은 FTA의 활용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

- 5)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란 FTA 체결에 따른 관세인하로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 등이 이전보다 더 확대되는 효과를,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란 역내국 간의 관세 철폐로 생산비가 낮은 역외국에서 수입하던 상품이 생산비가 더 높은 역내산으로 대체되는 것을 말한다.
- 6) G-3(Group of Three)는 멕시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3개국이 1994.6월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에서 모여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협력체를 결성하여 1995.1.1일 정식 출범하였다.
- 7) Estevadeordal의 엄격성지수가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지만 이외에 호주의 Productivity Commission(2004)에서 개발한 PC지수도 활용되고 있다. 호주 PC지수도 Estevadeordal의 연구에 기초한다.
- 8)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하면 각 국가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표준 등의 복잡하고 난해한 규정과 활용절차를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데 이는 FTA를 활용하려는 기업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기 때문에 FTA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스파게티 접시 속에 담긴 스파게티 가락들이 서로 복잡하게 엉켜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 하여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 또는 누들볼 효과(noodle bowl effect)라고 부른다.

성이 클수록 기업들은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FTA를 활용하는 대신 MFN관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었다. 정재완·손문정(2014)은 원산지규정의 일부로 볼 수 있는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하는데 관세율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관세율이 무세인 HS 제8542.31호(전자직접회로), HS 제2710.12호(경질석유와 그 조제품), HS 제8517.12호(무선전화기)의 3개 품목을 표본으로 10개의 FTA를 살펴보았는데 대부분의 FTA에서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이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게 규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품이 무세인데도 엄격성이 높게 측정된다는 것은 상호주의적 측면에서도 불합리한 결과로 보고 이후에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을 완화한 재협상 과정이 필요하고 새로 체결될 FTA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정인교(2009)는 FTA 활용수준과 관련하여 원산지기준의 엄격성을 설명하였는데 원산지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이 FTA 활용을 부진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였다. 대부분의 FTA는 시장개발에 반대하는 이해집단을 설득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일단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설정하는데 이렇게 설정된 엄격성은 기업의 FTA 활용도를 낮추게 하므로 향후에 체결되는 FTA는 가능한 완만하고 중립적인 원산지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정란(2008)은 복잡한 원산지기준이 FTA의 경제적 이익을 저해할 수 있으나 그 기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FTA 원산지기준이 기술적이고 그 품목이 방대하기 때문에 원산지 기준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조정란(2010)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FTA 원산지규정을 비교분석하였는데, 산업경쟁력과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반비례 관계로 산업경쟁력이 높은 품목은 관세율이 낮고 원산지규정이 완만해야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세계적 수준의 제조업 수출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와 일본은 원산지규정도 개방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윤상은·변하정(2012)은 FTA 원산지규정의 효과를 논의하려면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며 상위 5대 수출품목별로 교역량과 인구수를 비교, 분석하여 엄격성이 교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엄격성지수와 중력모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했는데 원산지기준의 엄격성이 무역교역량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최홍석(2007)은 한·칠레 FTA 원산지규정의 무역장벽효과를 실효관세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수입경험과 FTA 활용경험은 무역장벽지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안창달(2011)은 Estevadeordal의 엄격성지수를 활용하여 중력모형으로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이 우리나라 FTA의 교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엄격성지수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에서 교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영춘·성남길·김정숙(2012)은 생산공정의 글로벌화로 인해 원산지기준의 복잡성과 엄격성이 FTA 상품무역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관세청 직원, 관세사, 무역업체 등

1,200여 명의 FTA활용에 대한 설문조사로 FTA 특혜관세 활용실태를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조사결과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복잡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표준화된 FTA 원산지규정과 관세행정상의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김세영·조국형(2012)은 OECD 수출품목의 15개 산업분류로 분류하여 E-index를 종속변수로 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해 상품의 엄격성 요인을 실증분석하여 품목별원산지결정에 있어 우리나라의 단순화, 보편화된 기준을 가질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정혜련, 임정빈(2014)은 우리나라의 농업분야의 비중을 두고 있는 7개 주요 FTA에서 원산지규정을 엄격성지수와 관세양허 지수를 도입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FTA 협상에서 농업분야 등 민감산업보호에 주력하였는데 보호만이 최선이 아니므로 원산지규정 관련 적절한 수준의 엄격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FTA의 경우 원산지규정의 중요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기업의 FTA활용도를 낮추고 무역장벽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원산지규정이 적절한 수준에서 설정되어 단순화되고 표준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의 기존연구들과 비교하여 다음 세 가지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기존 연구는 우리나라의 수출입 품목수가 5천여 가지가 넘고 방대하여 모든 품목을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연구대상품목을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 또는 일부 수출품으로 한정하거나 관세율이 높은 품목 등으로 제한하는 등 연구대상 품목이 일부분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세계 공통인 HS 6단위를 기준으로 모든 품목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엄격성지수와 관련된 연구들은 2011년 발효된 한·EU FTA까지가 그 대상이었고 그 이후 발표, 타결된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과의 FTA의 9건을 포함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 타결, 발효된 모든 FTA를 연구대상으로 총망라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의 엄격성지수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엄격성지수의 무역장벽효과 분석에만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관세특혜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실제로 필요한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미흡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엄격성지수의 도출과 더불어 산업별 원산지결정기준의 유형별 분포를 분석, 정리하여 FTA 관세특혜에 활용되는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현실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3. 우리나라 FTA 엄격성지수별 원산지결정기준 유형

우리나라의 기 타결, 발효된 15개 FTA의 엄격성지수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협정문을 통

해 살펴본 결과 <표 2>와 같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엄격성지수 7에는 가장 엄격하거나 복잡한 형태로 볼 수 있는 19가지 유형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분류되어 있다. 예를 들어 완전생산기준, 원재료에 대한 충족조건, 원재료에 대한 충족조건의 선택기준과 결합기준, 특정공정기준과 특정공정기준의 결합기준 및 2단위 세번변경기준의 결합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엄격성지수 6에는 12가지 유형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분류되어 있는데,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2단위 세번변경기준의 선택기준 또는 결합기준으로 분류되어 있다. 엄격성지수 5에는 8가지 유형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분류되었고, 4단위 세번변경기준의 결합기준과 명시된 4단위 변경, 부가가치기준 50%초과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분류되어 있다.

<표 2> 우리나라 FTA의 엄격성지수별 원산지결정기준 유형

엄격성 지수	원산지결정기준 유형	비 고
7	WO RM RM or TECH RM or TECH+RVC RM or RVC RM or CTH RM+RVC TECH TECH+RVC CC+RM CC+TECH CC+TECH or RVC CC+TECH or TECH+RVC CC+ECTC+TECH CC+RVC CC+ECTC+RM CTH+RM CTH+RM or RVC CTH+RVC+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Wholly Obtained) :완전생산기준 • RM(Requirement on Materials) :원재료에 대한 충족조건 • TECH(Technical Test Method) :특정공정기준
6	CC CC or CTH+RVC CC or TECH CC or TECH+ECTC CC or TECH+RVC CC or RVC CC or CTSH+RVC CC or NCH CC or NCS+RVC CC+ECTC CC+ECTC or RVC CC+ECTC or NCH+RV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Change in Chapter) :2단위 세번변경기준 • CTH(Change In Heading) :4단위 세번변경기준 • CTSH(Change in Subheading) :6단위 세번변경기준
5	CTH+RVC CTH+RVC or RVC CTH+TECH CTH+ECTC+RVC CTH+ECTC or CTH+RVC CTH+ECTC or NCH+RVC NCH RVC)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VC(Regional Value Content) :역내부가가치비율 • ECTC(Exception to 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 특정 세번변경 제외
4	CTH CTH or RVC CTH or TECH CTH or TECH or RVC CTH or RVC+TECH CTH or CTSH+TECH CTH or CTSH+RVC CTH or NCS CTH or NCS+RVC CTH+ECTC CTH+ECTC or RVC CTH+ECTC or TECH CTH+ECTC or NCS CTSH+TECH or CTH+ECTC RVC(<=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H(Note Change In Heading) : 명시된 4단위 변경 • NCS(Note Change in Subheading) : 명시된 6단위 변경
3	NCS NCS or RVC CTSH+RVC CTSH+RVC+ECTC	
2	CTSH CTSH+ECTC CTSH+ECTC or RVC CTSH or RVC CTSH or RVC or NCS	

엄격성지수 4에는 엄격성지수 7에 이어 두 번째로 다양한 16가지 유형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분류되어 있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의 결합기준 또는 선택기준과 6단위 세번변경기준의 결합기준, 부가가치기준 50%이하 등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분류된다. 엄격성지수 3에는 4가지 유형이 있는데, 6단위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의 결합기준, 명시된 6단위 세번변경기준 및 명시된 6단위 세번변경기준의 선택기준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엄격성지수 2에는 5가지 원산지결정기준의 유형이 있으며 6단위 세번변경기준, 6단위 세번변경기준의 결합기준과 선택기준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원산지결정기준의 유형은 다양하고 비교적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Estevadeordal(2000)의 엄격성지수 분류기준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을 측정한다.

Ⅲ. 우리나라 FTA의 국가별 엄격성지수

〈그림2〉는 우리나라 FTA협정의 국가별 평균 엄격성지수를 계산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⁹⁾ 우선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의 경우 평균 엄격성지수가 4.75로 우리나라가 최초의 FTA로 처음 체결된 협정이었던 만큼 원산지결정기준이 상당히 엄격한 수준에

9) 우리나라 FTA의 현황을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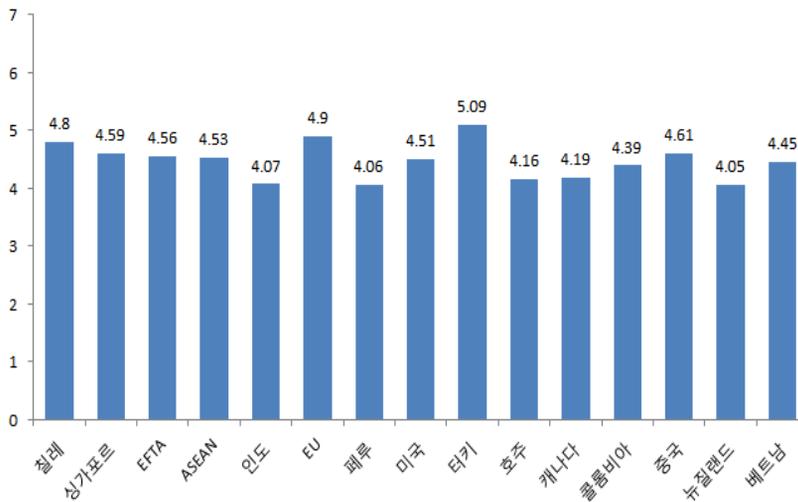
〈표 3〉 우리나라 FTA 현황(2016.2.1. 기준)

구분	상대국	일자	의의
발효	칠레	2004.4.1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2006.3.2	아세안 시장의 교두보
	EFTA(4개국)	2006.9.1	유럽시장의 교두보
	아세안(10개국)	2007.6.1 (국가별 상이)	제2의 교역대상
	인도	2010.1.1	BRICs 국가, 거대시장
	EU(28개국)	2011.7.1	세계 최대 경제권
	페루	2011.8.1	자원부국,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미국	2012.3.15	거대 선진 경제권
	터키	2013.5.1	유럽·중양아 진출 교두보
	호주	2014.12.12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캐나다	2015.1.1	북미선진시장
	중국	2015.12.20	제1위 교역대상
	뉴질랜드	2015.12.20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베트남	2015.12.20	제4위 투자대상국	
타결	콜롬비아	2014.04.29 (국회비준)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서 결정되었다. 칠레와의 FTA는 FTA에 대한 학습효과도 전무한 상태였고 원산지규정에 대한 전략도 미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최대한 엄격한 수준에서 원산지규정을 채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조정란, 2010). 한·칠레 FTA 이후 발표된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ASEAN FTA까지 평균 엄격성지수가 각각 4.59, 4.56, 4.53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긴 했으나 우리나라 15개 FTA의 전체 평균인 4.46보다는 높은 엄격성지수를 나타냈다. 하지만 2010년 발효된 한·인도 CEPA부터는 EU, 터키, 미국 및 중국을 제외하고는 전체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점차 엄격성지수가 완화되는 추세를 나타냈다.

최근 발효된 한·베트남 FTA에서도 엄격성지수가 4.45로 한·ASEAN FTA의 경우보다 엄격성지수가 조금 완화되었다. 한편, 엄격성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거대, 선진경제권인 EU, 미국, 중국 등이고 반대로 가장 낮은 국가는 뉴질랜드, 페루, 인도 등이다. 대륙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국가인 싱가포르, ASEAN, 베트남, 중국은 비슷한 수준의 엄격성지수를 나타내고 있고 인도는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고 유연한 엄격성지수를 나타냈다. EU 및 터키는 비교적 높은 엄격성을 나타냈는데, 이는 관세동맹을 형성하고 있는 EU와 터키의 경우 통일원산지규정인 PANEURO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엄격성지수에서도 동일하게 높은 지수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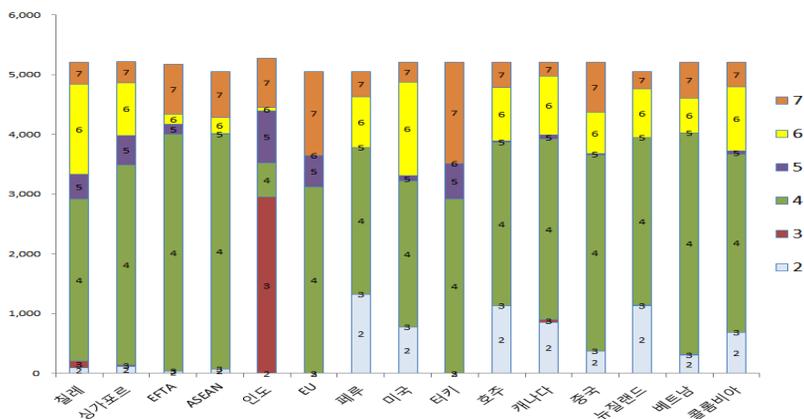
〈그림 2〉 협정국 별 평균 엄격성지수



반면에 NAFTA를 중심으로 하는 미주지역을 보면 칠레와 미국은 엄격성지수가 높지만 캐나다, 페루, 콜롬비아와의 FTA 엄격성지수는 각각 4.19, 4.06, 4.39로 평균 4.46보다 낮게 나타나 미주권 국가들의 경우에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엄격성지수가 완화되는 현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양주인 호주와 뉴질랜드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이 가장 낮은 국가들로 분류된다. 뉴질랜드의 경우 엄격성지수 4.05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그 엄격성 측면에서 칠레와의 FTA 이후 터키를 포함하는 EU권 FTA를 제외하고는 FTA체결이 늘어날수록 또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유연해지고 완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알 수 있다.

한편, 엄격성지수 7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수가 많은 국가는 EU와 터키로 가장 엄격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가지고 있다. 엄격성지수 6에 많은 품목이 분포된 국가는 칠레, 미국, 콜롬비아이다. 엄격성지수 5에 많은 품목이 분포된 국가는 인도이고 엄격성지수 4에는 모든 국가들에서 가장 많은 품목들이 분포되어 있다. 엄격성지수 3에는 인도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엄격성지수 2에는 페루, 호주, 뉴질랜드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품목들이 분포되어 있다. 엄격성지수별 현황에서 인도는 엄격성지수 3과 5에 많이 분포되고, 칠레, 싱가포르, EU, 미국, 터키는 높은 엄격성지수 5~7의 지수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페루와의 FTA부터는 터키를 제외하면 이전의 FTA에서는 거의 없던 엄격성지수 2의 품목수가 지속적으로 분류되어 나타나고 있는 점은 엄격성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FTA 협정별 엄격성지수 분포 현황(HS코드 기준)



다음으로 FTA 협정별로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엄격성지수를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표 4>의 한·칠레 FTA의 경우 엄격성지수 전체평균은 4.75이다. 또한 엄격성지수 4에 과반수가 넘는 52%의 품목들이 분류되어 있고 이중 화학제품이 3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엄격성지수 6으로 28.8%의 품목들이 분류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체결한 칠레와의 FTA는 민감품목들로 분류되는 1차산품 및 의류/직물/잡화의 엄격성지수가 대부분 6~7에 분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엄격성지수 6~7에 분류되어 있는 품목수는 1,199로 총 품목 5,209개의 23.0%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크다. 엄격성지수 평균인 4.75보다 높은 엄격성지수를 보이는 산업으로는 1차산품, 의류/직물/잡화, 광물, 가공식품, 비금속광물, 기타 운송기기, 가죽제품 등으로 나타났다. 위 품목군은 민감품목으로 일반적으로 관세율이 높은 산업들이고 이러한 산업의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 한·칠레 FTA의 엄격성지수

구분	2	3	4	5	6	7	계	평균
1차산품					460	75	535	6.14
가공식품			26	98	70		194	5.23
광물			42		110		152	5.45
화학제품	36	2	947	25	15		1,025	3.98
가죽제품			23		31		54	4.88
종이/목재			210		24		234	4.20
의류/직물/잡화		1	213	24	372	292	902	5.82
비금속광물	3		59		78		140	5.07
금속제품	29	6	378	16	204	4	637	4.58
일반기계	7	45	287	173			512	4.22
전기기계		54	166	67			287	4.04
운송기기			99				99	4.00
기타 운송기기			17		17		34	5.00
정밀기기	22		157	15	52		246	4.30
기타물품	1		90		67		158	4.30
계	98	108	2,714	418	1,500	371	5,209	4.75
비중(%)	1.9	1.9	52.1	8.0	28.8	7.1	100.0	

<표 5>는 2006년 발효된 한·싱가포르 FTA의 품목별 엄격성지수 분포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 엄격성지수의 평균은 4.59로 칠레보다는 낮지만 우리나라 15개 FTA 전체 평균인 4.46보다는 높다. 한·칠레 FTA와 마찬가지로 엄격성지수 4에 가장 많은 품목이 분류되어 있는데 전체품목의 약 2/3(64.2%)의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한·칠레 FTA보다 엄격성지수 4에 분류되어 있는 품목수가 많은 것으로 보아 엄격성이

칠레보다는 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싱가포르와의 FTA의 경우에도 민감품목인 1차산품, 가공식품 및 의류/직물/잡화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이 엄격성지수 6~7에 분포하고 있어 원산지결정기준이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보호를 위한 성격이 강함을 알 수 있다.

〈표 5〉 한·싱가포르 FTA의 엄격성지수

구분	2	3	4	5	6	7	계	평균
1차산품				4	479	52	535	6.09
가공식품			31	89	58	16	194	5.30
광물			152				152	4.00
화학제품	1		932	74	18		1,025	4.10
가죽제품			64	10			74	4.27
종이/목재			234				234	4.00
의류/직물/잡화			486		126	291	903	5.24
비금속광물			107		29		136	4.42
금속제품			520	13	104		637	4.35
일반기계	42	10	328	132			512	4.07
전기기계	36	9	156	86			287	4.02
운송기기			41	59			100	4.59
기타 운송기기	11		8	15			34	4.23
정밀기기	27		154	13	51		245	4.25
기타물품			143		15		158	4.19
계	117	19	3,356	495	880	359	5,226	4.59
비중(%)	2.2	0.4	64.2	9.5	16.8	6.9	100.0	

〈표 6〉은 한·EFTA FTA의 품목별 엄격성지수 분포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싱가포르와의 FTA에 이어 2006년 발효된 한·EFTA FTA의 엄격성지수 평균은 4.56으로 한·싱가포르 FTA보다는 낮지만 전체 15개 FTA 전체평균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엄격성지수 4의 비중이 76.7%로 전체품목의 3/4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칠레, 한·싱가포르 FTA에 비해서도 엄격성지수 4에 많은 품목이 분류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이 완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민감품목으로 엄격성지수가 높았던 가공식품 및 의류/직물/잡화의 경우에도 한·칠레, 한·싱가포르 FTA에 비해 낮은 엄격성지수 4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1차산품은 엄격성지수 7에 501개의 품목이 분류되어 높은 엄격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민감품목인 1차산품에 대한 보호수준이 여전히 높기 책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6〉 한·EFTA FTA의 엄격성지수

구분	2	3	4	5	6	7	계	평균
1차산품			5	3	29	501	538	6.92
가공식품			64	75	12	43	194	5.17
광물	1		151				152	3.99
화학제품	5		1,019				1,024	3.99
가죽제품			64		10		74	4.00
종이/목재			234				234	4.00
의류/직물/잡화			489	3	120	291	903	5.23
비금속광물			140				140	4.00
금속제품	28		594	15			637	3.93
일반기계			512				512	4.00
전기기계			287				287	4.00
운송기기		3	97				100	4.03
기타 운송기기			34				34	4.00
정밀기기			142	44			186	4.18
기타물품			138	19		1	158	4.14
계	34	3	3,970	159	171	836	5,173	4.56
비중(%)	0.7	0.1	76.7	3.1	3.3	16.2	100.0	

〈표 7〉은 2007년 발효된 한·ASEAN FTA의 품목별 엄격성지수 분포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한·ASEAN FTA의 엄격성지수 평균은 4.53으로 이전의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FTA 등보다 엄격성지수가 낮지만 여전히 15개 FTA 전체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표 7〉 한·ASEAN FTA의 엄격성지수

구분	2	3	4	5	6	7	계	평균
1차산품			51	1	15	462	529	6.68
가공식품			147	1	17	28	193	4.61
광물			148				148	4.00
화학제품	7		989	3		1	1,000	3.99
가죽제품			68		1		69	4.03
종이/목재			237				237	4.00
의류/직물/잡화			342		237	271	850	5.51
비금속광물			140		3		143	4.04
금속제품	26		592			3	621	3.93
일반기계	8		498				506	3.97
전기기계	30		233				263	3.77
운송기기			98				98	4.00
기타 운송기기			33				33	4.00
정밀기기	4		213				217	3.96
기타물품			141	4			145	4.03
계	75	-	3,930	9	273	765	5,052	4.53
비중(%)	1.5	-	77.8	0.2	5.4	15.1	100.0	

또한 총 품목 중 엄격성지수 4에 분류된 비중이 77.8%로 한·EFTA FTA보다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엄격성지수의 평균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또한 완화된 품목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 정도가 계속해서 유연해지고 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엄격성지수 2, 3, 5에 분류된 품목의 비중은 극히 낮은데 비해 엄격성지수 4와 7에 집중적으로 분류되는 것도 특징이다.

〈표 8〉 한·인도 CEPA의 엄격성지수

구분	2	3	4	5	6	7	계	평균
1차산품		2		41		492	535	6.83
가공식품		91	1	94	1	7	194	4.13
광물		141	11				152	3.07
화학제품		729	229	67			1,025	3.35
가죽제품		24	50				74	3.67
종이/목재		217	17				234	3.07
의류/직물/잡화		36		573		294	903	5.57
비금속광물		133		7			140	3.10
금속제품		340	248	27		22	637	3.61
일반기계		494			60	6	560	3.09
전기기계		273		14			287	3.10
운송기기		59		41			100	3.82
기타 운송기기		34					34	3.00
정밀기기		236		3			239	3.02
기타물품		141	16	1			158	3.11
계	-	2,950	572	868	61	821	5,272	4.07
비중(%)	-	56.0	10.8	16.5	1.2	15.6	100.0	

〈표 8〉은 2010년 발효된 한·인도 CEPA의 품목별 엄격성지수 분포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¹⁰⁾ 한·인도 CEPA의 엄격성지수 평균은 4.07로 이전의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FTA, 한·ASEAN FTA에 비해 엄격성지수가 대폭 낮아졌고 또한 15개 FTA 전체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한·인도 CEPA에서는 엄격성지수가 가장 낮은 엄격성지수 2에 분류된 품목은 없지만 엄격성지수 3에 전체품목수의 과반수가 넘는 56%의 품목이 분류되어 있다. 기존 FTA의 경우 엄격성지수 4가 가장 많은 품목이 분류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한·인도 CEPA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지수가 두드러지게 낮아졌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또한 현재까지 발효 및 타결된 다른 14개의 FTA에서는 엄격성지수 3에 분류된 품목이 없거나 몇 가지의 일부품목에만 분류되는 것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

10) CEPA는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의미하는데 실제 그 내용은 자유무역협정인 FTA와 크게 다른 바가 없다. 단지 인도와 일본 등은 FTA보다는 CEPA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한·인도 FTA가 아닌 한·인도 CEPA로 명명한다.

다. 인도와의 FTA의 경우에도 민감품목인 1차산품 및 의류/직물/잡화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이 엄격성지수 5~7에 분포하고 있어 원산지결정기준이 산업보호를 위한 성격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다만 가공식품의 경우 엄격성지수 3에 분류된 품목수가 상당히 많아졌는데 이는 가공식품의 보호수준이 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기존 FTA 등과 다른 모습이다. 이는 인도로부터 수입되는 가공식품의 경우 우리나라와 경쟁적 관계에 있는 식품보다는 보완적 관계에 있는 식품 종류가 많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9〉 한·EU FTA의 엄격성지수

구분	2	3	4	5	6	7	계	평균
1차산품			50			479	529	6.72
가공식품			48	38		107	193	5.86
광물			146			2	148	4.04
화학제품			791	198		11	1,000	4.23
가죽제품			50	3		16	69	4.69
종이/목재			185	49		3	237	4.69
의류/직물/잡화			90	5		755	850	6.67
비금속광물			120	9		14	143	4.29
금속제품			389	217		15	621	4.15
일반기계			506				506	4.00
전기기계			263				263	4.00
운송기기			98				98	4.00
기타 운송기기			33				33	4.00
정밀기기			217				217	4.00
기타물품			135	8		2	145	4.10
계	-	-	3,121	527	-	1,404	5,052	4.90
비중(%)	-	-	61.8	10.4	-	27.8	100.0	

〈표 9〉는 2011년 발효된 한·EU FTA의 품목별 엄격성지수 분포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한·EU FTA의 엄격성지수 평균은 4.9로 기존의 FTA의 엄격성지수가 꾸준히 완화되어 온 것과는 반대로 엄격성 정도가 다시 높아졌다. 엄격성지수가 이렇게 높아진 것은 EU가 28개국으로 이루어진 선진거대경제권으로 여타 개도국, 소규모 경제권과의 FTA에 비해 원산지결정기준에 있어 상대적으로 그 엄격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EU FTA의 엄격성지수는 15개 FTA 전체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한·EU FTA의 경우 엄격성지수가 3 이하에 분류된 품목이 전무하며 엄격성지수 4, 5, 7에만 분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엄격성지수 4에는 전체품목의 61.8%, 엄격성지수 5에는 10.4%, 엄격성지수 7에는 27.8%의 품목이 분류되어 있다. 일반기계, 전기기계, 운송기기, 정밀기기의 경우에는 엄격성지수 4에 모든 품목이 분류되어 있어 이들 품목에서는

상대적으로 엄격성이 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역시 민감품목인 1차산품, 가공식품 및 의류/직물/잡화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이 엄격성지수 7에 분포하고 있어 원산지결정기준이 산업보호를 위한 성격이 강함을 알 수 있다. 특히 1차산품과 의류/직물/잡화의 경우 엄격성지수가 각각 6.72, 6.67로 거의 7에 근접한 지수를 나타내고 있고 품목수에 있어서도 엄격성지수 7에 대부분이 품목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한·페루 FTA의 엄격성지수

구분	2	3	4	5	6	7	계	평균
1차산품	31		12		334	151	528	6.01
가공식품			94		99		193	5.03
광물	27		121				148	3.64
화학제품	527		439		34		1,000	3.01
가죽제품			69				69	4.00
종이/목재			142		95		237	4.80
의류/직물/잡화			328		252	270	850	5.55
비금속광물	5		109		29		143	4.34
금속제품	288		333				621	3.07
일반기계	397		109				506	2.43
전기기계	48		214				262	3.63
운송기기			98				98	4.00
기타 운송기기			33				33	4.00
정밀기기			217				217	4.00
기타물품			145				145	4.00
계	1,323	-	2,463	-	843	421	5,050	4.06
비중(%)	26.2	-	48.8	-	16.7	8.3	100.0	

〈표 10〉은 2011년 한·EU FTA에 이어 발효된 한·페루 FTA의 품목별 엄격성지수 분포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한·페루 FTA의 엄격성지수 평균은 4.06으로 한·인도 CEPA와 비슷한 수준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이 낮게 나타났다. 한·페루 FTA의 경우 기존 FTA에서는 엄격성지수 2의 비중이 3%이하로 거의 전무한 수준이었는데 비해 한·페루 FTA에서는 엄격성지수 2에 전체품목의 1/4인 넘는 26.2%가 분류되어 있다. 이는 그만큼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이 완화된 품목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엄격성지수 4에는 48.8%, 엄격성지수 6에는 16.7%, 엄격성지수 7에는 8.3%의 품목이 분류되어 있어 전체적으로는 기존의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성이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품목인 화학제품과 일반기계제품의 경우 엄격성지수가 각각 3.01, 2.43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엄격성을 많이 완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일반기계의 엄격성지수 2.43은 우리나라의 15개 FTA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가죽제품, 운송기기, 기타 운송기기, 정밀기기, 기타물품 모두 엄격성지수 4에만 분포되어 있다.

〈표 11〉은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의 품목별 엄격성지수 분포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한·미 FTA의 엄격성지수 평균은 4.51로 같은 선진거대경제권인 EU와의 FTA에서의 4.9에 비해서는 낮지만 기존의 FTA의 엄격성 수준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났다. 15개 FTA의 엄격성지수 전체 평균인 4.46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한·미 FTA에서 가장 큰 특징은 민감품목인 1차산품과 가공식품이 엄격성지수 6에 많이 분류되어 있다는 점이다. 기존 FTA에서는 위 품목의 경우 엄격성지수 7에 대부분이 분류되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한·미 FTA의 1차산품과 가공식품 부분의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이 좀 더 완화된 것을 나타낸다. 또한 엄격성지수 6의 품목 비중도 30.2%로 이전의 FTA보다 많이 분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의류/직물/잡화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이 여전히 엄격성지수가 7에 분포하고 있어 보호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일반기계 및 전기기계의 경우 엄격성지수의 평균이 각각 2.92, 2.95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기계류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1〉 한·미 FTA의 엄격성지수

구분	2	3	4	5	6	7	계	평균
1차산품	27		1		660		688	5.84
가공식품	3		24		145	39	211	5.90
광물	8		130	5	5		148	3.99
화학제품	109		861	2	26		998	3.84
가죽제품	14		38		13	4	69	4.14
종이/목재			168		67		235	4.57
의류/직물/잡화	9		219	16	331	268	843	5.74
비금속광물	1		112		29		142	4.39
금속제품	49	1	387		179		616	4.42
일반기계	308		131	68			507	2.92
전기기계	156	3	92			13	264	2.95
운송기기	16		80			1	97	3.70
기타 운송기기	10		14		9		33	3.94
정밀기기	55		102	1	53		211	3.99
기타물품	12		77		54		143	4.59
계	777	4	2,436	92	1,571	325	5,205	4.51
비중(%)	14.9	0.1	46.8	1.8	30.2	6.2	100	

〈표 12〉는 2013년 발효된 한·터키 FTA의 품목별 엄격성지수 분포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한·터키 FTA의 엄격성지수 평균은 5.09로 우리나라 15개 FTA 중 가장 높은 엄격성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터키의 경우 EU와 관세동맹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EU와의 FTA에 준하여 협정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협정의 내용과 개방수준도 대동소이할 것이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 수준도 유사할 것이다. 한·EU FTA의 엄격성지수 평균이

4.9이므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물론 15개 FTA의 엄격성지수 전체 평균인 4.46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한·터키 FTA의 경우 엄격성지수 7의 비중이 전체품목 중 거의 1/3에 가까운 32.5%로 여타 FTA의 엄격성지수 7의 비중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성지수 2, 3에 해당하는 품목이 전무한 것도 특징적인 부분이다. 또한 다른 FTA에서는 화학제품의 엄격성지수가 4이하로 비교적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한·터키 FTA에서는 EU와의 FTA에서와 같이 엄격성지수 5에 많은 품목이 분포되어 있어 엄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품목인 1차산품의 경우 평균 엄격성지수가 6.76으로 매우 높고 엄격성지수 7에 대부분의 품목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류/식품/잡화의 경우에도 엄격성지수가 한·EU와 동일한 6.67로 매우 높고 1차산품과 마찬가지로 엄격성지수 7에 대부분의 품목이 집중되어 있다. 한·터키 FTA는 한·EU FTA와 거의 동일한 특징과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12〉 한·터키 FTA의 엄격성지수

구분	2	3	4	5	6	7	계	평균
1차산품			56			632	688	6.76
가공식품			78	41		92	211	5.50
광물			146			2	148	4.04
화학제품			486	503		9	998	4.53
건축제품			55			14	69	4.61
종이/목재			202			33	235	4.42
의류/식품/잡화			93			750	843	6.67
비금속광물			119	8		15	142	4.37
금속제품			432	42		142	616	4.76
일반기계			507				507	4.00
전기기계			264				264	4.00
운송기기			96	1			97	4.01
기타운송기기			33				33	4.00
정밀기기			211				211	4.00
기타물품			140			3	143	4.06
계	-	-	2,918	595	-	1,692	5,205	5.09
비중(%)	-	-	56.1	11.4	-	32.5	100.0	

〈표 13〉은 2014년 발효된 한·호주 FTA의 품목별 엄격성지수 분포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한·호주 FTA의 엄격성지수 평균은 4.16으로 비교적 낮은 엄격성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15개 FTA의 엄격성지수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한·페루 FTA의 경우와 유사하게 엄격성지수 2에 해당되는 품목수가 전체의 1/4에 가까운 21.7%에 달하고 엄격성지수 4에도 과반수가 넘는 52.5%의 품목이 분류되어 있어 엄격성이 상당히 완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호주 FTA에서는 화학제품의 엄격성지수가 2.89로 이전의 FTA들에 비해서도 엄격성이 많이 완화되었는데 이는 가장 낮은 엄격성지수 2에 화학제품 품목의 21.7%가 분류되어 있는 데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감품목인 1차산품의 경우 엄격성지수 6과 7에 거의 대부분의 품목이 분류되어 있고 평균 엄격성지수도 6.53으로 그 보호수준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의류/직물/잡화의 경우에도 엄격성지수가 5.0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엄격성지수 6~7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다.

〈표 13〉 한·호주 FTA의 엄격성지수

구분	2	3	4	5	6	7	계	평균
1차산품		2	4		300	383	689	6.53
가공식품	11		148		52		211	4.39
광물			148				148	4.00
화학제품	554		444				998	2.89
가죽제품	10		50		9		69	3.97
종이/목재	8		227				235	3.93
의류/직물/잡화			422		388	33	843	5.04
비금속광물	6		107		29		142	4.32
금속제품	77		426		113		616	4.12
일반기계	238		269				507	3.06
전기기계	129		135				264	3.02
운송기기	14		61	22			97	3.94
기타운송기기			24		9		33	4.55
정밀기기	77		132		2		211	3.29
기타물품	8		134		1		143	3.90
계	1,132	2	2,731	22	903	416	5,206	4.16
비중(%)	21.7	0.04	52.5	0.4	17.3	8.0	100.0	

〈표 14〉는 2015년 발효된 한·캐나다 FTA의 품목별 엄격성지수 분포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한·캐나다 FTA의 엄격성지수 평균은 4.19로 한·호주 FTA와 비슷한 수준의 엄격성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15개 FTA의 엄격성지수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한·캐나다 FTA의 경우에도 엄격성지수 2에 해당되는 품목수가 전체의 1/5에 가까운 16.5%에 달하고 엄격성지수 4에도 과반수가 훨씬 넘는 58.0%의 품목이 분류되어 있어 엄격성이 상당히 완화된 수준에서 책정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엄격성지수 7의 경우 품목비중이 4.4%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화학제품은 한·호주 FTA와 동일한 2.89의 낮은 엄격성지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품목인 1차산품에서는 엄격성지수 7에 분류된 품목이 전무하다. 의류/직물/잡화의 경우에는 228개의 품목이 엄격성지수 7에 분류되어 1차산품보다 의류/직물/잡화의 품목의 보호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4〉 한· 캐나다 FTA의 엄격성지수

구분	2	3	4	5	6	7	계	평균
1차산품		42			646		688	5.76
가공식품	8		84		119		211	5.05
광물	8		140				148	3.89
화학제품	564		424		10		998	2.89
가죽제품		6	49		14		69	4.32
종이/목재	8		227				235	3.93
의류/직물/잡화			437		178	228	843	5.23
비금속광물	12		130				142	3.83
금속제품	85		531				616	3.72
일반기계	41	1	465				507	3.83
전기기계	68		196				264	3.48
운송기기			79	18			97	4.19
기타운송기기	11		4		18		33	4.42
정밀기기	49		119	41	2		211	3.75
기타물품			133	9	1		143	4.07
계	854	49	3,018	68	988	228	5,205	4.19
비중(%)	16.4	0.9	58.0	1.3	19.0	4.4	100.0	

〈표 15〉는 2014년 타결된(미발효) 한· 콜롬비아 FTA의 품목별 엄격성지수 분포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한· 콜롬비아의 FTA의 엄격성지수 평균은 4.39 같은 남미 국가인 페루와의 FTA의 4.06에 비해서는 높지만 15개 FTA의 엄격성지수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표 15〉 한· 콜롬비아 FTA의 엄격성지수

구분	2	3	4	5	6	7	계	평균
1차산품			5		274	409	688	6.58
가공식품	7			58	146		211	5.32
광물			148				148	4.00
화학제품	360		612		26		998	3.33
가죽제품			69				69	4.00
종이/목재			148		87		235	4.74
의류/직물/잡화			336		507		843	5.20
비금속광물			113		29		142	4.41
금속제품	48		568				616	3.84
일반기계	227		280				507	3.10
전기기계	45		219				264	3.66
운송기기	1		96				97	3.98
기타운송기기			33				33	4.00
정밀기기			211				211	4.00
기타물품	3		140				143	3.96
계	691	-	2,978	58	1,069	409	5,205	4.39
비중(%)	13.3	-	57.2	1.1	20.5	7.9	100.0	

한·콜롬비아 FTA의 경우 엄격성지수 2에 해당되는 품목수가 전체의 13.3%에 달하고 있고 엄격성지수 4에도 과반수가 훨씬 넘는 57.2%의 품목이 분류되어 있지만 엄격성지수 6과 7에 각각 20.5%, 7.9%의 품목이 분류되어 있어 상반된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1차산품은 엄격성지수 7에 대부분의 품목이 분류되어 엄격하게 책정되고 있다. 의류/식품/잡화의 경우에는 엄격성지수 4에도 상당한 비중이 분류되어 있어 엄격성이 일정정도 완화되고 있다. 화학제품은 다른 FTA와 유사하게 엄격성지수 2와 4에 분류되고 있고 엄격성지수도 3.33으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한·콜롬비아 FTA에서는 엄격성이 높은 품목인 1차산품, 가공식품, 의류/식품/잡화 이외에 종이/목재 및 비금속광물도 각각 4.74, 4.41로 비교적 높은 엄격성지수를 나타냈다.

〈표 16〉 한·중 FTA의 엄격성지수

구분	2	3	4	5	6	7	계	평균
1차산품						688	688	7.00
가공식품			64		120	27	211	5.52
광물	6		103		24	15	148	4.55
화학제품	2		977			19	998	4.05
건축제품			68			1	69	4.04
종이/목재			210		21	4	235	4.23
의류/식품/잡화			326		496	21	843	5.25
비금속광물			141			1	142	4.02
금속제품	54		522		11	29	616	4.00
일반기계	243		228	4		32	507	3.24
전기기계	73		190			1	264	3.46
운송기기			88	9			97	4.09
기타 운송기기			15		18		33	5.09
정밀기기			210	1			211	4.00
기타물품			143				143	4.00
계	378	-	3,285	14	690	838	5,205	4.61
비중(%)	7.3	-	63.1	0.3	13.3	16.1	100.0	

〈표 16〉은 2015.12월 발효된 한·중 FTA의 품목별 엄격성지수 분포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한·중 FTA의 엄격성지수 평균은 4.61로 기존의 FTA에서 엄격성이 대체적으로 완화되고 있었던 추세를 볼 때 낮은 수준은 아니다. 15개 FTA의 엄격성지수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한·중 FTA의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다른 FTA에 비해 크고 특히 농수축산업 등 1차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원산지결정기준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보호수준을 높이 보수적으로 책정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엄격성지수 6과 7에 각각 전체품목수의 13.3%, 16.1% 등 총 29.4%가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적 고려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중 FTA의 1차산

품 688개의 품목 모두가 엄격성지수 7에 분류되어 있다는 점은 이러한 점을 특징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민간품목인 가공식품 및 의류/직물/잡화의 경우에도 엄격성지수가 각각 5.52, 5.25로 상당히 높은 보호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기타 운송기기는 엄격성지수가 5.09로 15개 FTA에서 가장 높은 엄격성지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일반기계 및 전기기계의 경우 엄격성지수의 평균이 각각 3.24, 3.26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기계류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7〉 한·뉴질랜드 FTA의 엄격성지수

구분	2	3	4	5	6	7	계	평균
1차산품		2	45		222	260	529	6.31
가공식품	10		99		84		193	4.77
광물			149				149	4.00
화학제품	506		495				1,001	2.99
가죽제품	6		63				69	3.83
종이/목재			237				237	4.00
의류/직물/잡화			364		454	31	849	5.18
비금속광물			141		2		143	4.03
금속제품	91		476		54		621	3.88
일반기계	235		271				506	3.07
전기기계	150		113				263	2.86
운송기기	9		89				98	3.82
기타 운송기기			33				33	4.00
정밀기기	94		123				217	3.13
기타물품	36		109				145	3.50
계	1,137	2	2,807	-	816	291	5,053	4.05
비중(%)	22.5	0.04	55.6	-	16.1	5.8	100.0	

〈표 17〉은 2015.12월 발효된 한·뉴질랜드 FTA의 품목별 엄격성지수 분포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한·뉴질랜드 FTA의 엄격성지수 평균은 4.05로 같은 대양주 국가인 호주와의 FTA에 비해 약간 낮은 엄격성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15개 FTA의 엄격성지수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한·뉴질랜드 FTA의 경우 한·호주 FTA를 상당부분 원용했다는 점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도 한·호주 FTA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호주 FTA의 경우와 유사하게 엄격성지수 2에 해당되는 품목수가 전체의 1/4에 가까운 22.5%에 달하고 엄격성지수 4에도 과반수가 넘는 55.6%의 품목이 분류되어 있어 엄격성이 상당히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뉴질랜드 FTA에서는 화학제품의 엄격성지수가 2.99로 한·호주 FTA와 같이 낮은 엄격성 정도를 보이고 있다. 이 또한 가장 낮은 엄격성지수 2에 화학제품 품목의 50% 이상이 분류되어 있는 데서 영향을 받

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감품목인 1차산품의 경우 엄격성지수 6과 7에 거의 대부분의 품목이 분류되어 있고 평균 엄격성지수도 6.31로 그 보호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의류/직물/잡화의 경우에도 엄격성지수가 5.1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엄격성지수 4에도 상당히 많은 품목이 분류되어 있다는 점이 한·호주 FTA와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기기계의 경우 엄격성지수가 2.8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일반기계도 3.07로 보호수준이 낮은 수준에서 책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뉴질랜드 FTA는 한·호주 FTA와 그 성격이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한·EU FTA와 한·터키 FTA가 거의 유사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표 18〉 한·베트남 FTA의 엄격성지수

구분	2	3	4	5	6	7	계	평균
1차산품		5	45	3	41	594	688	6.70
가공식품			138		70	3	211	4.71
광물	1		146			1	148	4.01
화학제품	5		996				1,001	3.99
가죽제품			69				69	4.00
종이/목재			235				235	4.00
의류/직물/잡화			375		466	3	844	5.11
비금속광물			142				142	4.00
금속제품	34		580			2	616	3.90
일반기계	159		348				507	3.37
전기기계	94		170				264	3.29
운송기기			97				97	4.00
기타 운송기기			33				33	4.00
정밀기기			211				211	4.00
기타물품	17		126				143	3.76
계	310	5	3,711	3	577	603	5,209	4.45
비중(%)	6.0	0.1	71.2	0.1	11.1	11.6	100.0	

〈표 18〉은 2015.12월 발효된 한·베트남 FTA의 품목별 엄격성지수 분포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한·베트남 FTA의 엄격성지수 평균은 4.45로 같은 날 발효된 한·중 FTA보다는 낮지만 한·뉴질랜드 FTA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15개 FTA의 엄격성지수 평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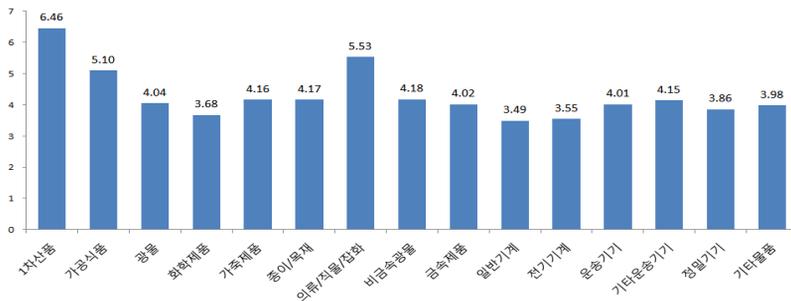
2007년 발효된 한·ASEAN FTA의 경우와 같이 엄격성지수 4에 71.2%로 대부분의 품목이 분류된 것이 엄격성지수 평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특징적인 것은 한·ASEAN FTA와 비교하여 볼 때 평균 엄격성지수는 낮아졌다는 점이다. 그 예로 한·ASEAN FTA에서는 의류/직물/잡화 부문에서 엄격성지수 7에 분류되었던 품목들이 한·베트남 FTA에서는 엄격성지수 6으로 분류되어 엄격성이 일정부분 완화되었다는 점

을 들 수 있다. 또한 일반기계의 품목이 한·ASEAN FTA에서는 엄격성지수 4에 대부분 분류되었던데 반해 한·베트남 FTA에서는 엄격성지수 2에 159개의 품목이 분류되어 엄격성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IV. 우리나라 FTA의 산업별 엄격성지수 분석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FTA의 국가별 엄격성지수 분석에 이어 산업별 엄격성지수 분석을 실시한다. 아래 <그림 4>는 우리나라 FTA의 각 산업별 평균 엄격성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1차산품, 가공식품과 의류/직물/잡화는 품목별 엄격성지수에서 가장 큰 엄격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동 품목들의 경우 경쟁력이 취약하고 민감성을 가지는 품목이기 때문에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보호무역조치를 위해 다분히 엄격한 수준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채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 엄격성지수에서 일반기계 3.49, 전기기계 3.55, 화학제품 3.68, 정밀기기 3.86으로 엄격성지수가 낮게 확인되었다. 엄격성지수가 낮은 품목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높은 산업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쉽게 설정되어 엄격성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 우리나라 FTA의 산업별 엄격성지수



다음으로 산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표 19>의 1차산품의 엄격성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1차산품은 품목분류 제1부의 제1류 산동물부터 제3부 제15류의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으로 분류된다. 1차산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품목군으로 엄격성지수 평균 6.46으로 가장 엄격한 지수인 6과 7에 대부분 분포되어 있다. 엄격성지수 7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인 WO에 많은 물품들이 많이 설정되어 있는데, EFTA, ASEAN, 인도, EU, 터키, 중국은 1차산품을 가장 엄격하게

설정하였다.

엄격성지수 6에는 1차산품의 민감성에도 불구하고 2단위 세번변경기준인 CC를 채택하여 엄격성을 완화한 국가들도 있다. 칠레, 싱가포르, 페루, 미국,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이며 싱가포르와 호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주권 국가들이며, 싱가포르는 경제정책이 많이 개방되어 있어 엄격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표 19〉 1차산품의 엄격성지수

지수	원산지결정기준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계
7	WO			474	453	489	443	151		629	383		409	688	260	594	4,973
	RM			12	7		36			3							58
	CTH+RM or RVC															3	3
	CC+RVC	75	52	15	2	3											147
6	CC	362	285		2			229	547		182	591	219		130	14	2,561
	CC or TECH		1														1
	CC or RVC				13											27	40
	CC+ECTC	98	193	29				105	113		118	55	28		92		831
5	CC or TECH+ECTC											27					27
	CTH+RVC					41											41
	RVC>50		4	3	1												8
4	CTH			2			12	7	1	48	4				45		119
	CTH or RVC				41											43	84
	CTH+ECTC						32	5		2		5					44
	RVC<=50			3	10		6			6						2	27
3	CTSH+RVC					2											2
2	CTSH						31	26			2	40			2	5	106
	CTSH+ECTC							1			2						3
	평균	6.14	6.09	6.92	6.68	6.83	6.72	6.01	5.84	6.76	6.53	5.76	6.58	7	6.31	6.7	6.46

엄격성지수 7의 원산지결정기준의 특징은 EFTA, ASEAN, EU, 터키 등 신흥경제국인 ASEAN과 유럽권 FTA에서는 원재료에 대한 충족 조건으로 하는 RM기준을 설정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구분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의 FTA 중 중국을 제외하면 여타 모든 국가들은 엄격성지수 6과 7로 나뉘어 분포되어 있는 반면, 중국의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이 모두 완전생산기준인 WO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식품과 관련된 문제들의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5년 10월 1일부터 식품안전법을 시행하는 등 엄격성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1차산품과 가공식품 무역교역에서 수입 뿐 아니라 수출에서도 원산지결정기준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0〉은 가공식품의 엄격성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가공식품의 경우 품목분류 제4부의 제16류부터 제24류의 조제식료품과 음료, 알콜, 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등이 포함된다. 가공식품의 경우 위의 1차산품처럼 엄격하진 않으나 엄격성지수 5와 6에 많이 분포되어 엄격성지수 평균 5.10으로 상당히 엄격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엄격성지

수 6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인 CC에 많은 품목이 분포하여 그 엄격성을 나타냈고, 엄격성지수 5의 원산지결정기준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조합기준인 CTH+RVC에 많이 설정되어 있다. 엄격성지수 4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인 CTH에 많은 품목이 분류되어 있다. 또한 FTA가 체결된 시간 순서대로 가공식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공식품 무역은 크게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제조담배와 커피조제품 등 가공식품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도 완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표 20〉 가공식품의 엄격성지수

지수	원산지결정기준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계
7	WO				3					37				27		3	70
	RM			27	20		81			55							183
	RM+RVC				5	7	26										31
	CC+RVC	16	16														39
	CC+ECTC+RM								25								25
	CC+RM								13								13
	CTH+RM								1								1
6	CC	70	55	10		1		51	124		37	89	103	108	68	9	725
	CC or RVC				17			2						5	16	61	101
	CC+ECTC		3	2				46	21		15	30	39	7			163
	CC+ECTC or RVC												4				4
5	CTH+RVC	98	84	75	1	94	35			41							428
	RVC>50		5				3										8
4	CTH	26	28	55		1	2	54	22	58	128	81	45	35	95	9	639
	CTH or RVC									30		17	5			128	180
	CTH+ECTC		3	9	134		41	10	2	20	3	3	7		4		236
	RVC≤50				13		5						1	29		1	49
3	CTSH+RVC					91											91
	CTSH								3		10	8	6		9		36
2	CTSH+ECTC										1		1				2
	CTSH or RVC														1		1
평균		5.23	5.3	5.17	4.61	4.13	5.86	5.03	5.9	5.5	4.39	5.05	5.32	5.52	4.77	4.71	5.10

이 중 ASEAN의 경우 가공식품은 엄격성이 중간 수준인 엄격성지수 4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엄격성지수를 완화하는 대신 특정세번변경을 제외하는 ECTC를 조합하는 CTH+ECTC 방식을 설정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가공식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의 특징은 EFTA, EU, 터키만이 원재료에 대한 충족 조건으로 하는 기준인 RM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체로 엄격성지수 4와 5로 완화된 품목을 두고 있으나 RM기준이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그리고 인도의 엄격성지수가 4.13으로 FTA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의 경우 원산지기준에서 공통기준인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조합기준인 CTSH+RVC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공식품에서 엄격성이 완화된 것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1〉은 광물의 엄격성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광물에는 품목분류 제5부 제25류 소금·황·토석류 및 석고·석회와 시멘트부터 제27류 광물성 연료의 광물성 생산품 등이 포함되는데 엄격성지수 평균은 4.04로 평균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엄격성지수 4에 대부

분의 품목들이 설정되어 있으며 원산지결정기준으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인 CTH에 많이 설정되어 있다. 광물의 경우 ASEAN과 베트남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인 CTH or RVC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인도는 엄격성지수 3에 해당하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조합기준인 CTSH+RVC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 광물성 생산품은 인도가 가장 유연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1〉 광물의 엄격성지수

지수	원산지결정기준	필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계
7	WO													15		1	16
	RM						2										2
	TECH									2							2
6	CC	110						5						24			139
5	CTH+TECH							5									5
4	CTH	42	139	151		11	46	121	123	145	134	140	136	103	137		1,428
	CTH or RVC				148												294
	CTH+ECTC		13				99				7						119
	CTSH+TECH or CTH+ECTC												5				5
	CTH or CTSH+TECH								7		7		7		7		28
	CTH or TECH														5		5
	RVC<=50						1			1							2
3	CTSH+RVC					141											141
2	CTSH			1					1			4		6		1	13
	CTSH+ECTC								7			4					11
	CTSH or RVC							27									27
	평균	5.45	4	3.99	4	3.07	4.04	3.64	3.99	4.04	4	3.89	4	4.55	4	4.01	4.04

〈표 22〉는 화학제품의 엄격성지수를 나타낸다. 화학제품은 품목분류 제6부 제28류부터 제38류의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과 제7부 제39류부터 제40류인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으로 분류된다. 화학제품은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으로 엄격성지수 평균 3.68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설정되어 있다. 그 중 엄격성지수 4에 많은 품목들이 분류되어 있으며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인 CTH에 많이 설정되어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ASEAN과 베트남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인 CTH or RVC에 설정되어 있고 인도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조합인 CTSH+RVC에 많이 설정되어 있다. 미국과의 FTA 이후에는 엄격성지수 2의 6단위 세번변경기준인 CTSH방식으로 설정하는 추세로 화학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그 엄격성이 완화되는 추세이다. 화학제품은 기존 관세장벽이 낮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원산지결정기준을 가능한 단순하고 쉽게 설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표 22〉 화학제품의 엄격성지수

지수	원산지결정기준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타키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계
7	RM				1		11			9							21
	WO													19			19
6	CC	15	6					34	17			1	14				87
	CC+ECTC		9						9			9	12				39
	CC or CTH+RVC		3														3
5	CTH+RVC	25	58		3	67	2			503							658
	CTH+ECTC or CTH+RVC		16						2								18
	CTH+RVC or RVC						196										196
4	CTH	255	859	80		229	35	351	840	117	377	385	461	940	457		5,386
	CTH+ECTC	7	73	2			80	12	16		33	39		36	10		308
	CTH or RVC	685		866	989		17	76		313	33		140	1	28	996	4,144
	CTH or CS+RVC								5								5
	RVC=50			24			537			33							594
	CTH+ECTC or RVC			47			122			23	1		11				204
3	CTSH+RVC					729											729
	NCS or RVC	2															2
2	CTSH	30		5				7	109		512	548	323		469		2,003
	CTSH+ECTC	2									5	16		2			25
	CTSH or RVC	4	1		7			520			37		37		37	5	648
평균		3.98	4.1	3.99	3.99	3.35	4.23	3.01	3.84	4.53	2.89	2.89	3.33	4.05	2.99	4	3.68

〈표23〉 가죽제품의 엄격성지수

지수	원산지결정기준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타키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계
7	WO													1			1
	RM						16			14							30
	CC+TECH								4								4
6	CC	24			1				13		9	14					61
	CC+ECTC		10														10
	CC or NCH	7															7
5	NCH						3										3
	CTH	4	58	61		50		69	24	55	50	49	69	68	63		620
4	CTH or RVC				68											69	137
	CTH or TECH			13													13
	CTH+ECTC	19	6				50		14								89
3	NCS											6					6
	CTSH+RVC					24											24
2	CTSH								14		9				5		28
	CTSH+ECTC										1				1		2
평균			4.27	4	4.03	3.67	4.69	4	4.14	4.61	3.97	4.32	4	4.04	3.83	4	4.16

〈표 23〉은 가죽제품의 엄격성지수를 나타낸다. 가죽제품은 품목분류 제8부의 제41류부터 제46류로 원피, 가죽, 모피 및 이들의 제품으로 분류되며 엄격성지수 4.16으로 평균수준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엄격성지수 4에 많은 품목이 분류되어 원산지결정기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인 CTH가 설정되어 있다. 국가별로 보면 ASEAN과 베트남만이 CTH or RVC로 설정되어 있다. 인도의 경우 엄격성지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원산지결정기준에 공통기준인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조합기준인 CTSH+RVC의 영향을 받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엄격성지수 평균이 각각 3.97, 3.83으로 대양주 국가와의 FTA가 가장 엄격성이 완화되고 개방적인 원산지결정기준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는 종이/목재의 엄격성지수를 나타낸다. 종이/목재는 품목분류 제9부 제44류의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부터 제10부의 제49류의 인쇄서적·신문·회화 및 기타의 인쇄

물 등이 포함된다. 엄격성지수 평균은 4.17로 평균수준을 보이고 있다. 엄격성지수 4의 원산지결정기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인 CTH에 많은 물품이 분포되어 있다. ASEAN과 베트남은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원산지결정기준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인 CTH or RVC에 모든 품목이 분포되어 있다. 인도는 엄격성지수 3에 많이 분포되어 가장 낮은 지수를 보이고 원산지결정기준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조합기준인 CTSH+RVC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표 24〉 종이/목재의 엄격성지수

지수	원산지결정기준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계
7	WO													4			4
	RM									5							5
	TECH									28							28
	NCC					3											3
6	CC	24						76	67				75	21			263
	CC or RVC							19									19
	CC or CTH+RVC											12					12
5	CTH+TECH						47										47
	NCH						2										2
4	CTH	203	209	211		17	15	103	168	196	223	227	143	208	235		2,158
	CTH or RVC				237			39		3							235
	CTH+ECTC or NCS	3															3
	CTH+ECTC	4	25	22			166			2	4		5	2	2		232
	CTH+ECTC or RVC						3										3
	RVC<=50			1			1			1							3
3	CTSH+RVC					217											217
2	CTSH										8	8					16
	평균	4.2	4	4	4	3.07	4.69	4.8	4.57	4.42	3.93	3.93	4.74	4.23	4	4	4.17

〈표 25〉는 의류/직물/잡화의 엄격성지수를 나타낸다. 의류/직물/잡화는 품목분류 제11부 제50류 견, 양모, 섬유모, 면부터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 제12류의 제64류 신발류부터 제67류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으로 분류되며 엄격성지수와 원산지결정기준이 가장 다양하고 복잡하게 분류되어 있다. 엄격성지수 평균은 5.53으로 그 엄격성 수준이 높으며 특히 엄격성지수 6에 많이 설정되어 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인 CC와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특정세번변경 제외기준인 ECTC의 조합기준인 CC+ECTC에 가장 많은 품목들이 분류되어 있다.

엄격성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EU와 터키이고 칠레와 미국도 높게 나타나 유럽 및 미주권 국가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을 어렵게 설정하고 있다. 특히 인도에서 원재료에 대한 충족 조건인 RM에 많은 품목을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엄격성지수 7에서는 원재료에 대한 충족 조건 기준인 RM과 2단위 세번변경기준인 CC,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특정공정 기준의 결합기준인 CC+TECH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설정되었다. 또한 CC+TECH에 특정세번변경 제외기준이 포함된 CC+ECTC+TECH의 원산지결정기준도 분류되어 있다.

의류·직물·잡화의 원산지결정기준의 또 다른 특징은 콜롬비아에서는 엄격성지수 7

에 해당하는 엄격한 기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콜롬비아는 특정공정기준인 TECH의 기준도 포함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로 엄격성을 완화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직물·잡화는 관세율이 높고 경쟁률이 취약하여 민감한 품목이기에 엄격성이 높고 원산지결정기준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분류되는 것이 특징이다.

〈표 25〉 의류/직물/잡화의 엄격성지수

지수	원산지결정기준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계	
7	WO				3									21		3	27	
	RM			1		294	315			314							924	
	TECH								217								217	
	RM or TECH						223										223	
	RM or TECH+RVC								218								218	
	RM+RVC								1								1	
	TECH						217										217	
	CC+TECH	1	230	231					2		33	228						725
	CC+TECH or RVC				268											31		299
	CC+ECTC+TECH	291	61	25				270	266									913
CC+TECH or TECH+RVC			34														34	
6	CC	177	125	79				57	34		386	141	76	54	428		1,557	
	CC or RVC				237											24	466	
	CC+ECTC	195	1					195	297		2	37	431		2		1,160	
	CC+ECTC or RVC													175			175	
5	CC or TECH+RVC			41													41	
	CTH+RVC					573											573	
	CTH+TECH						1										1	
	CTH+ECTC+RVC	24					4		16								44	
4	RVC=50			3													3	
	CTH	20	462	225				30	37	59	171	402	25	113	356		1,900	
	CTH or RVC				313					6				58		354	731	
	CTH+ECTC	191	24	12			60	258	182			35	300	1	8		1,071	
	CTH+ECTC or RVC				8		24	11		22			11	154			230	
	CTH or CTSH+TECH	2															2	
	CTH or TECH										251						251	
	CTH or TECH or RVC				21											21	42	
	CTH or RVC+TECH			249				29									278	
	RVC=50			3			6			6							15	
3	CTSH+RVC	1				36			6								37	
2	CTSH								9								9	
	평균	5.82	5.24	5.23	5.51	5.57	6.67	5.55	5.74	6.67	5.04	5.23	5.2	5.25	5.18	5.11	5.53	

〈표 26〉은 비금속광물의 엄격성지수를 나타낸다. 비금속광물은 품목분류 제13부 제68류부터 70류의 석, 플라스터, 시멘트, 석면 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으로 분류되며 엄격성지수 평균 4.18의 엄격성 수준은 보통이다. 엄격성지수 4에 많은 품목이 설정되어 있어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인 CTH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ASEAN, 페루, 베트남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인 CTH or RVC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인도는 엄격성지수 3에 많이 분류되어 지수가 가장 낮고, 원산지결정기준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조합기준인 CTSH+RVC로 설정되어 있는 품목이 많다.

〈표 26〉 비금속광물의 엄격성지수

지수	원산지결정기준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팔랑비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계
7	WO													1			1
	RM						14			13							27
	TECH									2							2
6	CC	78	29					29	29		27		29				221
	CC or RVC				3						2				2		7
5	NCH						9			8							17
	CTH-RVC					7											7
4	CTH	2	102	131			5		71	119	107	130	106	141	141		1,055
	CTH or RVC				140			105					7			142	394
	CTH-ECTC	57	5	9			102	4	41								218
	CTH-ECTC or TECH						13										13
3	CTSH-RVC					133											133
2	CTSH	1						5	1		6	11					24
	CTSH-ECTC	2										1					3
	평균	5.07	4.42	4	4.04	3.1	4.29	4.34	4.39	4.37	4.32	3.83	4.41	4.02	4.03	4	4.18

〈표 27〉 금속제품의 엄격성지수

지수	원산지결정기준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팔랑비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계
7	WO				3									29		2	34
	RM									138							138
	RM or CTH						11										11
	TECH									4							4
	TECH-RVC						4										4
6	CC-RVC	4				22											26
	CC	188	104						168		72			11	54		597
	CC or RVC	16							11		41						68
5	NCH						170			42							212
	CTH-RVC	16		15		27											58
	CTH-ECTC-RVC						47										47
	CTH-ECTC or CTH-RVC		13														13
4	CTH	243	515	467	9	248	55	132	317	347	334	510	436	443	418		4,474
	CTH or RVC			124	569			188	5	48	27		132		34	580	1,707
	CTH-ECTC	130	5	2			308	4	48	30	65	21		79	24		716
	CTH-ECTC or RVC	1		1	12		3	9									26
	CTH-ECTC or TECH						20										4
	CTH or CTSH-RVC									5							5
	CTH or NCS	4															4
	CTH or NCS-RVC								12								12
	CTH or TECH										5						5
	RVC<=50			2			3			2							7
3	CTSH-RVC					340											340
	CTSH-RVC-ECTC	6															6
2	NCS								1								1
	CTSH	25		28				172	44		77	85	48	54	91		624
	CTSH or RVC				26			116	3							34	179
	CTSH-ECTC	4							2								6
	평균	4.58	4.35	3.93	3.93	3.61	4.15	3.07	4.42	4.76	4.12	3.72	3.84	4	3.88	3.9	4.02

〈표 27〉은 금속제품의 엄격성지수를 나타낸다. 금속제품은 품목분류 제14부의 제71류인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와 제15부 제72류의 철강부터 제83류의 비금속제의 각종 제품으로 분류된다. 엄격성지수 평균 4.02로 엄격성 수준은 보통수준이며, 엄격성지수 4에 많은 품목이 설정되어 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인 CTH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인 CTH or RVC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금속제품은 페루가 엄격성지수 2에 해당하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인 CTSH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인 CTSH or RVC에 많은 품목이 분포되어 있다. 페루 이후부터 제결순서대로

원산지결정기준이 CTSH의 품목들이 꾸준히 분류되고 있다.

〈표 28〉은 일반기계의 엄격성지수를 나타낸다. 일반기계는 품목분류 제16부의 제84류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며 엄격성지수 평균 3.49로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이 낮고 개방적이다. 엄격성지수 4에 많이 설정되어 있고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CTH or RVC에 가장 많이 분류되어 있다. 미주권 국가인 페루와 미국은 엄격성지수가 2.43, 2.92로 가장 낮는데 그 이유는 많은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이 6단위 세번변경기준인 CTSH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선택기준인 CTSH or RVC에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페루 이후부터 체결순서대로 원산지결정기준이 CTSH와 CTSH or RVC를 설정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일반기계부문에 있어서 경쟁력이 강해 원산지결정기준을 쉽게 설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표 28〉 일반기계의 엄격성지수

지수	원산지결정기준	칠레	싱가포르	E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계
7	CTH+RVC+RM					6											38
5	CTH+RVC	71	92			60			68					4			295
	RVC<=50		22														22
	CTH+ECTC or CTH+RVC	102	18														120
4	CTH	109	129					7	90		1	378	2	154	11		881
	CTH or CTSH+RVC	178	199						3								380
	CTH or RVC			329	497			102	22	480	267		278		260	348	2,583
	CTH or NCS+RVC								11								11
	CTH+ECTC								2			87					89
	CTH+ECTC or RVC			124			487				1						612
3	RVC<=50			59	1		19		3	27				74			183
	CTSH+RVC	45	10			494						1					550
2	CTSH	7	42					105	264		10	41	218	243	12		942
	CTSH+ECTC								30			4					34
	CTSH+ECTC or RVC										21						21
	CTSH or RVC				8			292	14		203		9		223	159	908
	평균	4.22	4.07	4	3.97	3.09	4	2.43	2.92	4	3.06	3.83	3.1	3.24	3.07	3.37	3.49

〈표 29〉는 전기기계의 엄격성지수를 나타낸다. 전기기계는 제16부 제85류의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 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며 엄격성지수 평균 3.55로 엄격성이 낮고 개방적이다. 일반기계와 마찬가지로 엄격성지수 4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인 CTH or RVC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페루 이후부터 체결순서대로 엄격성지수 2의 6단위 세번변경기준인 CTSH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인 CTSH or RVC로 일관되게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기계도 경쟁력이 강해 원산지결정기준을 쉽게 설정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29〉 전자기계의 엄격성지수

지수	원산지결정기준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일본 비타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계
7	RM								13								13
	WO													1			1
5	CTH+RVC	18	48			14											80
	CTH+ECTC or CTH+RVC	49	38														87
4	CTH	78	61					5	57		1	152	6	30			390
	CTH or CTSH+RVC	87	94						9								190
	CTH or NCS+RVC								14								14
	CTH or RVC				227	233		209	4	182	132		213	160	113	170	1,643
	CTH or NCS	1															1
	CTH or TECH or RVC						4			4							8
	CTH+ECTC		1						8			44					53
	CTH+ECTC or RVC				38		180				2						220
	RVC<=50				22		79			78							179
3	CTSH+RVC	54	9			273			3								339
	CTSH		36						150			68	29	39			322
2	CTSH+ECTC								5								5
	CTSH+ECTC or RVC										18						18
	CTSH or RVC					27		48	1		111		16	34	150	94	481
	CTSH or RVC or NCS					3											3
평균		4.04	4.02	4	3.77	3.1	4	3.63	2.95	4	3.02	3.48	3.66	3.46	2.86	3.29	3.55

〈표 30〉은 운송기계의 엄격성지수를 나타낸다. 운송기계는 제17부 제86류부터 87류까지 차량과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며 엄격성지수 평균 4.01로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은 보통수준이다. 엄격성지수 4에 많은 물품이 설정되어 있으며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인 CTH or RVC와 부가가치기준인 RVC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운송기계의 원산지결정기준의 특징은 부가가치기준을 많이 설정한 것이 특징이며 산업 민감성을 고려해 승용차와 기타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그 외 새시와 차체로 구분하여 부가가치 비율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동 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승용차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인 CTH와 부가가치기준인 RVC 60%를 모두 충족 시 원산지를 인정하고, HS8703.10호 내지 HS8703.90호까지 9개 품목이 여기에 설정되어 있다. 기타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은 부가가치기준으로 RVC 50%로 설정되었고, 그 외 새시와 차체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인 CTH 또는 부가가치기준인 RVC 40%로 합의되었으며 HS8706.00호 내지 HS8709.90호의 6가지 품목이 해당된다.

〈표 30〉 운송기기의 엄격성지수

지수	원산지결정기준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계
7	RM								1								1
5	CTH+ECTC or NCH+RVC											18					18
	CTH+RVC		59			41					22			9			131
	CTH+RVC or RVC			3					1								4
4	CTH	24	35						15	2	16	19		26	22		159
	CTH or CTSH+RVC		6									16					22
	CTH or NCS+RVC								16				16				32
	CTH or RVC	48		96	72		71	3	43	37			68	6	67	79	590
	CTH+ECTC						2		18								20
	CTH+ECTC or RVC			1			45										46
	RVC<=50	27			26		51	27	28	51	8	28	28	56		18	348
3	CTSH+RVC					59											59
2	CTSH								2				1				3
	CTSH or RVC								14		14				9		37
평균		4	4.59	4.03	4	3.82	4	4	3.7	4.01	3.94	4.19	3.98	4.09	3.82	4	4.01

〈표 31〉은 기타 운송기기의 엄격성지수를 나타낸다. 기타 운송기기는 제17부 제88류부터 제99류의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선박과 수상구조물로 분류되며 엄격성지수 평균 4.15로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은 보통 수준이다. 엄격성지수 4에 많은 물품이 분포되어 있으며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인 CTH or RVC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기타 운송기기에는 엄격성지수 평균 4.15보다 엄격한 지수 6에 설정된 품목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원산지결정기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인 CC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인 CC or RVC,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조합기준의 CC or CTH+RVC에 분류되어 있다. 기타 운송기기는 엄격성지수 평균으로 보았을 때 적정 수준의 엄격성을 가지고 있으나 민감성이 있는 물품은 엄격하게 분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기타 운송기기의 엄격성지수

지수	원산지결정기준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계
6	CC		15									18					33
	CC or RVC										9			18			27
	CC or CTH+RVC	17							9								26
4	CTH	17	8						14		9	4		15			67
	CTH or RVC				33			33		15	15		33		33	33	195
	CTH+ECTC or RVC						33			18							51
	RVC<=50			34													34
3	CTSH+RVC					34											34
2	CTSH		11						10			11					32
평균		5	4.23	4	4	3	4	4	3.94	4	4.55	4.42	4	5.09	4	4	4.15

〈표 32〉는 정밀기기의 엄격성지수를 나타낸다. 정밀기기는 품목분류 제18부 제90류부터 제92류까지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시계와 악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며 엄격성지수 평균 3.86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유연하게 설정되어 있다. 엄격성지수 4에 많은 품목이 설정되어 있으며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인 CTH or RVC에 가장 많은 물품이 분포되어 있고 칠레, 싱가포르, 미국을 제외하고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이 보통 수준에서 설정되어 있다. 뉴질랜드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엄격성지수 2의 6단위 세번변경기준인 CTSH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인 CTSH or RVC로 가장 유연하게 설정되어 있다.

〈표 32〉 정밀기기의 엄격성지수

지수	원산지결정기준	칠레	싱가포르	E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뉴질랜드	세르비아	계
6	CC	34	49						24			2					109
	CC or RVC	17	2						25		2						46
	CC or NCS+RVC								3								3
	CC+ECTC								1								1
	CC+ECTC or NCH+RVC	1															1
5	CTH+RVC	15	13	13		3			1					1			46
	CTH+RVC or RVC			31													31
	CTH+ECTC or NCH+RVC											41					41
4	CTH	64	56					9	41		52	58	4	142	67		493
	CTH or RVC	3		142	213			208	3	141	80		207	66	56	211	1,330
	CTH or CTSH+RVC	86	98						53								237
	CTH+ECTC	4							5								9
	CTH+ECTC or RVC						151										151
	CTH or NCS+RVC											61					61
	RVC=>50						66			70				2			138
3	CTSH+RVC					236											236
2	CTSH	21	27						14		71	49			78		260
	CTSH or RVC	1			4				36		6				16		63
	CTSH+ECTC								5								5
평균		4.3	4.25	4.18	3.96	3.02	4	4	3.99	4	3.29	3.75	4	4	3.13	4	3.86

〈표 33〉은 기타물품의 엄격성지수를 나타낸다. 기타물품은 제19부 제93류의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부터 제20부 제94류 가구와 침구, 제95류 완구류, 제96류 잡품, 제21부 제97류의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으로 분류되며 엄격성지수 평균 4.02로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 정도는 적정수준이다. 엄격성지수 4에 많은 물품이 설정되어 있고,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인 CTH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인 CTH or RVC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칠레와 미국이 엄격성지수 6으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인 CC와의 조합기준의 형태로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다.

〈표 33〉 기타물품의 엄격성지수

지수	원산지결정기준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패루	미국	터기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계
7	RM						2			3							5
	RM or RVC			1													1
6	CC	18	15						24		1	1					59
	CC or CTH+RVC	10							9								19
	CC or NCS+RVC								19								19
	CC or CTS+RVC	39															39
	CC+ECTC								2								2
5	CTH+RVC			19		1											20
	CTH+RVC+ECTC						8										8
	CTH+ECTC or NCH+RVC											9					9
	RVC<=50				4												4
4	CTH	90	142	73		16	3		69	70	62	93	23		71		712
	CTH or RVC			34	141			145	1	37	72		117	143	38	126	854
	CTH+ECTC		1				69										70
	CTH+ECTC or RVC						29										29
	CTH or NCH+RVC								7			40					47
	RVC<=50			31			34			33							98
3	CTSH+RVC					141											141
	CTSH								4		7				24		35
2	CTSH+ECTC	1															1
	CTSH or RVC								8		1		3		12	17	41
	평균	4.83	4.19	4.14	4.03	3.11	4.1	4	4.59	4.06	3.9	4.07	3.96	4	3.5	3.76	4.02

V. 결론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지난 10여 년간 FTA 네트워크를 꾸준히 구축하여 2016.2월 현재 51개 국가를 포함하는 14건의 FTA를 발효하였고, 콜롬비아와도 FTA를 타결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신흥경제권과 거대·선진경제권 모두와 FTA를 이룬 유일한 국가로 발돋움함과 동시에 세계 3위 수준의 경제영토를 확보하였다. 하지만 FTA의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입상품의 원산지가 협정당사국으로 확인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원산지를 확인하는 기준은 협정문 부속서에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기업들은 FTA 관세특혜를 받기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복잡하고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비용부담도 적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 발효(타결포함) 15건의 FTA마다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해 FTA별로 원산지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어려움과 혼란도 뒤따랐다.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원산지결정기준은 엄격하게 설정될수록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원산지결정기준 엄격하게 적용될수록 자유무역의 확대를 통한 무역의 이익이라는 FTA의 본질적인 목적이 저해될 위험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FTA를

통한 무역의 이익의 담보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원산지결정기준의 설정 및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한 연구의 기초가 되는 것이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 정도를 측정하는 엄격성지수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엄격성지수로는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Estevadeordal의 엄격성지수를 사용하였다. 실제 무역에 사용되는 수출입 물품은 HS품목분류에 따르고 있고, 해당 물품이 실질적인변형이 발생되어야 하기 때문에 Estevadeordal의 엄격성지수가 가장 적합한 분석도구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동 엄격성지수를 활용하였다.

Estevadeordal의 엄격성지수를 토대로 우리나라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분석한 결과 협정국별 엄격성지수에서는 처음 발효된 한·칠레 FTA에서는 원산지규정에 대한 학습효과와 전략이 미비하여 우선적으로 엄격하게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성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거대·선진경제국인 터키, EU, 미국, 중국 등이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럽권 FTA를 제외하고는 엄격성지수가 완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었다. 엄격성지수별 현황에서는 대부분 엄격성지수 4에 많은 품목을 분류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페루 FTA 이후부터는(한·터키 FTA를 제외하고는) 엄격성지수 2에 품목들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엄격성 수준이 완화되는 품목이 많이 생겨나는 추세로 분석될 수 있다. 대륙별로는 대양주 국가가 엄격성이 가장 낮았으며, 미주, 아시아, 유럽 순으로 엄격성이 높았다. 대양주 국가는 최근 엄격성이 완화되는 추세 속에서 체결되었고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로 국가 간 개방정도가 가장 유연하여 엄격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원산지결정기준의 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분류되어 있었다. 엄격성이 가장 높은 엄격성지수 7에는 19가지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분류되어 가장 다양하고 복잡했고, 이어서 엄격성지수 4의 원산지결정기준에도 15가지의 많은 원산지결정기준의 유형이 분류되어 있었다. 엄격성지수가 높을수록 다양한 원산지결정기준의 유형이 있었으며 지수가 낮을수록 원산지결정기준의 유형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별로 엄격성지수를 분석하면 관세율이 높고 경쟁력이 취약하여 민감성을 가지는 품목의 경우 1차산품 6.46, 가공식품 5.10, 의류/직물/잡화 5.53 등 엄격성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이 높은 품목인 경우 일반기계 3.49, 전기기계 3.55, 화학제품 3.68, 정밀기기 3.86 등으로 엄격성지수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교역 활성화를 위해 원산지결정기준이 유연하게 설정된 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원산지결정기준의 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분류되어 있었다. 엄격성이 가장 높은 엄격성지수 7에는 19가지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분류되어 가장 다양하고 복잡했고, 이어서 엄격성지수 4의 원산지결정기준에도

15가지의 많은 원산지결정기준의 유형이 분류되어 있었다. 엄격성지수가 높을수록 다양한 원산지결정기준의 유형이 있었으며 지수가 낮을수록 원산지결정기준의 유형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엄격성지수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FTA의 산업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살펴보면, 1차 산품에는 WO와 CC의 원산지결정 기준이 가장 많았고, 한·ASEAN, 한·EFTA, 한·EU, 한·터키 FTA에서는 원재료에 대한 충족조건기준인 RM기준을 설정하고 있었다. 가공식품에서는 CC, CTH+RVC, CTH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많이 설정하였고, 광물, 화학제품, 가죽제품, 종이/목재, 비금속광물,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기계, 운송기기, 기타 운송기기, 정밀기기, 기타물품은 대부분 CTH, CTH or RVC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설정하고 있었다. 특히 화학제품은 CTSH를 많이 설정하였다. 의류/직물/잡화는 가장 다양한 원산지결정기준이 분류되어 있었는데, 원재료에 대한 충족 조건기준을 원산지결정기준으로 하거나 특정가공공정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며 RM, CC+TECH를 원산지결정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원산지결정기준이 다양하고 복잡한 여러 유형을 가지고 있으나 품목 수 기준으로 볼 때 많은 품목이 소수의 원산지결정기준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원산지결정기준의 유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각 FTA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르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을 활용하여 원산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FTA 대열에 뒤늦게 합류하여 아직까지는 FTA 활용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많은 반면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기 때문에 FTA 검증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자간, 다자간 FTA의 서로 다른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기업, 산업계에서 실제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표준화된 원산지결정기준과 대응방안의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원산지규정의 복잡성과 엄격성으로 인한 기업의 혼란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기 발표·타결한 FTA의 협정국가를 대상으로 품목별로 엄격성지수의 분포현황을 분석, 비교하여 그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과 관련된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FTA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원산지확인에 있어서 원산지결정기준으로 FTA 관세특혜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변형기준인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과 유형을 지수별, 국가별, 산업별로 연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원산지결정기준의 보충적 기준을 함께 고려하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이 FTA 발효 후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도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을 보인다. 아울러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상 당사국 간의 산업경쟁력 등과 같은 산업적

관계와 관련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세영·조국형(2012), “FTA 원산지결정에 미치는 요인분석”, 「관세학회지」, 제13권 제2호, pp.69-91.
- 김영춘·성남길·김정숙(2012), “FTA 특혜관세 활용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3권 제4호, pp.23-42.
- 노덕률(2008), “한국 FTA 특혜관세 활용에 있어 스파게티보울(Spaghetti bowl) 현상의 결정요인”, 「관세학회지」, 제11권 제2호, pp.1-21.
- 윤상은·변하정(2012), “엄격성지수에 따른 한국 수출 교역량 조사와 FTA 활용방안 제고”, 「논문대회 수상집」.
- 안창달(2011),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무역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달(2014), “원산지결정기준”, 국제원산지정보원.
- 정인교(2009), “우리 기업의 FTA 활용도 조사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3호, pp.367-390.
- 정인교·조정란·방호경·김석오(2005),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ROO) 연구 및 실증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pp.1-171.
- 정재완·손문정(2014), “관세특혜를 위한 PSR규정시 고려할 관세율에 대한 연구”, 「조세연구」, 제14권 제3호, pp.241-265.
- 정혜련·임정빈(2014), “한국과 주요국 FTA 협정의 농업분야 원산지 규정에 대한 연구”, 「농촌경제」, 제37권 제1호, pp.33-67.
- 조정란(2006), “엄격성지수(RI)를 활용한 FTA 원산지규정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1호, pp.201-221.
- 조정란(2008), “한미 FTA 원산지기준의 주요내용과 경제효과 추정”, 「국제통상연구」, 제13권 제1호, pp.133-154.
- 조정란(2010), “한국과 일본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분석 및 한·일 FTA 원산지규정 시사점 연구”, 「무역학회지」, 제35권 제1호, pp.253-273.
- 최홍석(2007), “한·칠레 FTA 특혜원산지규정의 무역장벽효과 실증분석”,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p.35-66.

최홍석·이영달(2011), “FTA시대 원산지 이론과 실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Estevadeordal, A.(2000) “Negotiating Preferential Market Access: The Case of NAFTA,”
Journal of World Trade Vol.34 Issue 1, p.13.

Estevadeordal, A and K, Suominen(2004), “Rules of Origin in FTAs in Europe and in
the Americas: Issues and Implications for the EU-Mercosur Inter-Regional
Association Agreement,” *INTAL-ITD Working Paper* 15.

우리나라의 15개 각 FTA 협정문.

Rules of Origin of Korea's FTAs: based on Restrictiveness Index

Mi-Ok Kwon

Hee-Ryang Ra

Abstract

This paper analyzed the restrictiveness of the rules of origin of the 15 FTAs of Korea utilizing the restrictiveness index suggested by Estevadeordal(2000). The main purpose of the paper is to provide an update of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estrictiveness of the rules of origin based on product type and country. The research showed that FTA with EU and Turkey showed the highest restrictiveness, whereas New Zealand, Peru and India showed the lowest. Overall, Korea's restrictiveness index was found to be at appropriate levels. Additionally, in terms of the current status by restrictiveness index, over time with the exception of European countries in the FTA, products with the lowest score in restrictiveness index of 2 continued to be processed in the Korea-Peru FTA which illustrated the current trend of easing restrictiveness. In terms of restrictiveness index based on product type, commodity products, processed food, clothing-fabric-general merchandise were found to be very strict. However, in categories such as general machinery, electronics, chemical products and precision instruments, the restrictiveness index showed the lowest readings. The results imply the high restrictiveness in sensitive products that are vulnerable from competition through high tariffs, and easing of restrictiveness in competitive products in order to vitalize trade. The results also show that in Korea's FTA, Korea's rules of origin in FTA vary and are sorted in a complicated manner.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FTAs and a number of different rules of origin, there is a need for standardized criteria for Korea. This study was significant in that it compiled all the rules of origin and the restrictiveness index of all FTAs that came into effect and have been negotiated in Korea.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expected to be used as an informative and meaningful guideline for Korea's FTAs.

〈Key word〉 FTA of Korea, Rules of Origin, Products Specific Rules of Origin, Restrictiveness Index